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노동계 대표 추천단체 정비〉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32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노동계 대표 추천단체 정비 ..... | 3 |
| 가. 개정안의 내용 .....                  | 3 |
| 나. 검토의견 .....                     | 4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7 |



## I. 개요

###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3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1. 15.
- (3) 회 부 일 : 2025. 1. 1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제2호)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노동계 대표 추천단체 정비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②<br>(생략)<br>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br>1. (생략)<br>2. <u>노동계</u>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br>3. ~ 5. (생략)<br>④·⑤ (생략) |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②<br>(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br>-----<br>-----<br>-----<br>3. ~ 5. (현행과 같음)<br>④·⑤ (현행과 같음) |
|                                                                                                                                                                                                                                                         | <b>부칙</b><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

| 현행 | 개정안                                              |
|----|--------------------------------------------------|
|    |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 인증 등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사항<sup>1)</sup>이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추천단체를 ‘전국적 규모’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2월 현재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5인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소속 위원은 없음.

- 1) 「의료법」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현황(2025년 2월 현재) ]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
| 위원장 | 박민수   | 보건복지부             | 제2차관        | 당연직                                 |
| 위 원 | 김국일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관     | 공무원                                 |
|     | ○ ○ ○ | 대한병원협회            | 병원평가위원장     | 의료인·<br>의료기관<br>단체 추천               |
|     | ○ ○ ○ | 대한치과병원협회          | 적정관리(QI) 이사 |                                     |
|     | ○ ○ ○ | 대한한방병원협회          | 기획이사        |                                     |
|     | ○ ○ ○ | 대한의사협회            | 정책이사        |                                     |
|     | ○ ○ ○ | 대한간호협회            | 이사          |                                     |
|     | ○ ○ ○ | 소비자시민모임           | 사무총장        | 노동계·<br>시민·<br>소비자<br>단체 추천         |
|     | ○ ○ ○ | 한국소비자연맹           | 회장          |                                     |
|     | ○ ○ ○ | 바른사회시민회의          | 운영위원        |                                     |
|     | ○ ○ ○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이사          |                                     |
|     | ○ ○ ○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동대표        |                                     |
|     | ○ ○ ○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 회장          | 보건의료·<br>의료기관<br>시설물<br>안전진단<br>전문가 |
|     | ○ ○ ○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 회장          |                                     |
|     | ○ ○ ○ | 대한환자안전질향상<br>간호사회 | 회장          |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 노동조합의 층위를 갖춘 체계로 구조화하여 그 설립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2)</sup>

개정안의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혹은 ‘노동조합’ 외에 행정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노동자의 일반 조합까지를 광의로 포함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임.
- 참고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명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제4항제5호나목<sup>3)</sup>)한 경우와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규정한 사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제1호<sup>4)</sup>)가 있고,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④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안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라 하여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면서 ‘노동조합’ 대신 ‘노동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sup>5)</sup>) 등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sup>6)</sup>의 참여가 배제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개정안은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다양한 근로자 단체의 추천 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 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연합단체 미가맹 조합원은 2023년 기준 총 479,75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2,737,379명) 대비 약 17.5%에 해당함.

□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 영역인 만큼, 보건의료제도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단체 등의 비전문가 영역이 보건의료제도 문제에 중복하여 다수위원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각 의료분야 전문과목 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전문가 추천위원을 확충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결정과 집행의 의료전문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함.

□ 대한작업치료사협회(찬성)

-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함.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 5항 1호에서 3호까지 명시하는 각 위원들의 역할을 고려한 추천이 필요함.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참여자 선정 시 법률 해석 모호성 방지를 위해 지칭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4